

수원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12083 판결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1208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147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준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이종학, 김정규

변론종결 2022. 3. 31.

판결선고 2022. 5. 2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147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841,74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C’를 ‘C’로, ‘피고 B’을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 및 C’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2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841,743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재무실사를 진행하는 등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2020. 3. 26.자 합의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16억 원으로 감액되었다. 설령 원고의 소외 회사 인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한 10억 원에 더하여 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6. 10억 원, 2020. 3. 27. 2억 원, 2020. 4. 29. 4억 원 합계 16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1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선 인정 사실과 앞서 기재한 증거들, 갑 제10, 16,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16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인수와 관계없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범위를 16억 원으로 한정하기로 하는 일종의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9. 3. 30. C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양수도대금 35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20. 1. 8.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1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가, 2020. 3. 26.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16억 원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2) 2020. 1. 8.자 합의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2019. 3. 30. 계약해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10억 원으로 한다. 단,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실사 후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수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제11조)’라는 내용이 있고, 2020. 3. 26.자 합의서에는 ‘2020. 1. 8.자 합의를 작성하여 2020. 2. 25.까지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2020. 2. 26. 10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아니하여 2020. 1. 8.자 합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전문)’,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2019. 3. 30.자 계약해지 합의 및 2020. 1. 8.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는 16억 원으로 한다(제3조 제1항)’, ‘본 합의에 따른 반환대금 및 지연이자, 피고의 연대보증 범위, 질권설정 해지 및 반환대금 이외에 본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2020. 1. 8.자 합의에 따른다(제5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0. 1. 8.자 합의서 작성 전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가치평가가 35억 원을 넘는 경우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10억 원 부분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앞선 1), 2)항 기재 내용과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할 경우 원고의 양수도대금 지급채무와 C의 이 사건 양수도대금 반환채무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과 C는 2020. 3. 31.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을 17억 1,00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평가가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 35억 원에서 위 17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16억 원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감액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원고가 주채무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범위를 이 사건 양수도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약 20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3. 26.자 합의서 작성 전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무 범위 축소가 논의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2020. 1. 8.자 및 2020. 3. 26.자 각 합의서 문언의 내용, 위 각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동기, 소외 회사의 인수 여부와 연결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3. 26.자 합의서를 통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0. 3. 26.자 합의서 제5조, 2020. 1. 8.자 합의서 제6조 단서, 제11조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5) 원고가 2020. 1. 8.자 합의서 작성 이후 소외 회사에 임원을 파견하고 재무실사를 진행하는 등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원고가 C에게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원고의 직원 F는 2020. 3. 26.자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같은 합의서 제5조의 의미를 묻는 피고에게 ‘만약 인수가 안 되면 이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로 되고, 원래대로 30 몇억 이렇게 부담하셔야 되는 걸로 가는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인증서)은 제1심 공동피고인 C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인증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강선아, 판사 신동주